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8-29호

## 2018년 충남대전학사 입사생 수칙 개정 안내

충남대전학사 입사생 수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 (출입카드 발급)	출입카드 분실 시 즉시 발급	출입카드 분실 시 2일 이내에 발급
제5조 (출입)	< 식사시간 > 평일 석식 18:30 ~ 19:30 주말 조식 07:30 ~ 08:30	< 식사시간 > 평일 석식 18:00 ~ 19:30 주말 조식 08:30 ~ 09:30
제8조 (외박)	전화 외박 월 2회(1박 2일) 신청시간 : 21:00 ~ 23:00	전화 외박 월 4회(1박 2일) 신청시간 : 09:00 ~ 24:00 <b>※ 전화외박은 1박 연장 및 신청 가능</b>
제14조 (세탁 등)	< 세탁실 이용시간 > 06:00 ~ 23:30	< 세탁실 이용시간 > 06:00 ~ 23:50
제20조 (입사비·부담금의 징수 및 환불)	②항, ③항, ⑨항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관리규정 제27조(입사비 및 부담금의 징수) 6항을 따른다.
제21조 (대청소의 날)	호실별 배정 장소 청소 후 호실청소	신청자별 배정 장소 청소 전 전사생 개인별 호실청소 (신청자 상점)
제24조 (입사기간)	입사 허가기간은 8학기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았을 경우 1학기에 한해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별 수업연한을 기준해 입사 허가기간을 정한다. 단,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 있을 경우 1학기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구분	내 용	점수
별	1. 사생수칙 제16조 금지행위 해당자	
	가. 남·여 기숙사(이성층)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퇴사
	다.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퇴사
	2. 반입금지 물품 관련 위반 행위	
	가.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퇴사
	나.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자	20
	다. 미승인 전자제품 사용 및 소지자	20
	라. 기타 반입금지 물품 사용 및 소지자	20
	3. 정보통신 관련 위반 행위	
	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 및 정보통신망 침해	퇴사
	나. 학사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퇴사
다. 정보통신 관련 물품 무단설치 행위	20	
점	4. 사내 질서 관련 위반 행위	
	가. 학사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품을 손괴, 훼손, 은닉하는 행위	퇴사
	나. 학사 경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퇴사
	다. 사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행위	20~퇴사
	라. 오락, 소란, 음주행위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20~퇴사
	마. 학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물품 무단 사용	20~퇴사
	바. 학사 내 흡연 행위(옥상 포함)	10
	사. 호실 임의교환 행위 또는 가구 임의변경	20~퇴사
	5. 출입관련 위반 행위	
	가. 통제구역 또는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지정 출입구 이외 출입 행위	퇴사
	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퇴사
라.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10	
마. 출입카드 없이 출입하는 행위	5	
바. 사생(본인) 출입카드를 다른 사생을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5	
사. 사생(본인)의 출입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15	

구분	내 용	점수
별 점	6. 환경 및 위생관련 위반 행위	
	가.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숙사 정기점검 시 10점)	5~10
	나. 지정시간 및 장소 외 세탁 또는 다림질 행위	5~10
	다. 호실 내에서 각종 취사 행위 등	퇴사
	라. 식당 집기 및 물품 무단 반출 및 호실 반입 행위	5~10
	마. 식사 후 음식을 남기는 행위	3
	바. 분리수거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7. 점검 관련 위반 행위	
	가. 출입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외박 및 출입을 조작하는 행위	퇴사
	나. 출입카드 분실 후 2일 이내 재발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 및 외박하는 행위	15~20
점	다. 폐문시간(24:00) 이후 귀사행위	5~7
	라. 무단외박 행위(전화외박 신청 월 4회 초과)	5
	마. 전화외박 신청시간 위반(09:00~24:00)	3
	8.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가. 지도사 및 직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15~20
	나. 사내 질서를 위한 지도사의 지도 거부(1차 5점, 2차 10점)	5~10
다.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3~5	

2018. 05. 01.